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현황

3.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기각현황, 기각사유 및 무죄 확정 판결현황

○ '97, '98년 및 '99. 1~8.까지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기각현황 및 무죄확정 판결현황을 붙임과 같이 각 제출합니다

○ 기각사유와 관련된 자료는 검찰에서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 등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구속영장현황 1부.
2. 무죄확정 판결현황 1부. 끝.

구분 청별	1997년			1998년			(1999. 1. 1~8. 31 현재)		
	청구인원	기각인원	발부인원	청구인원	기각인원	발부인원	청구인원	기각인원	발부인원
계	143,591	25,684	117,907	161,745	22,915	138,830	85,820	11,412	74,408
서울지검	41,202	7,616	33,586	42,168	5,869	36,299	24,134	3,460	20,674
인천지검	12,267	2,050	10,217	13,350	1,643	11,707	6,335	774	5,561
수원지검	15,097	2,470	12,627	18,197	2,040	16,157	9,653	876	8,777
춘천지검	5,308	1,022	4,286	6,044	1,040	5,004	3,209	502	2,707
대전지검	9,092	1,607	7,485	11,217	1,681	9,536	4,991	566	4,425
청주지검	3,928	472	3,456	4,720	481	4,239	2,566	326	2,240
대구지검	15,359	2,671	12,688	17,595	2,671	14,924	8,778	1,191	7,587
부산지검	15,050	2,702	12,348	15,619	2,449	13,170	9,133	1,373	7,760
울산지검				3,827	699	3,128	2,057	293	1,764
창원지검	7,828	1,163	6,665	8,630	1,147	7,483	4,593	525	4,068
광주지검	10,683	2,618	8,065	11,566	1,857	9,709	5,836	860	4,976
전주지검	5,845	956	4,889	6,671	993	5,678	3,585	558	3,027
제주지검	1,932	337	1,595	2,141	345	1,796	950	108	842

○ 각 청별 무죄확정 판결 현황

(단위 : 인원)

청별	구분	무 죄 확 정			
		계	97년도	98년도	99.1-99.8.31
계		2,522	647	1,091	784
대검찰청		1,007	345	337	325
서울고검		152	37	63	52
대전고검		21	9	8	4
대구고검		16	2	10	4
부산고검		28	12	13	3
광주고검		33	12	11	10
서울지검		621	65	327	229
인천지검		85	7	60	18
수원지검		89	27	52	10
춘천지검		61	23	19	19
대전지검		90	22	54	14
청주지검		30	3	24	3
대구지검		44	21	10	13
부산지검		38	22	7	9
울산지검		22	1	8	13
창원지검		54	14	33	7
광주지검		70	4	24	42
전주지검		47	10	30	7
제주지검		14	11	1	2

18. '97년 이후 검찰 기소사건 중 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거나 수사미진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사건통계(각 지검,지청별)

=====

○ '97년 이후 기소사건 중 법원판결에서 무죄선고된 인원은 붙임과 같으나, 수사미진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사건통계는 범위가 광대하여 통계가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각 지검·지청별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 인원('97년 이후)

각 지검·지청별 기소사건 중 무죄선고 인원

구분 청별	기 소 인 원			무 죄 선 고			
	97년도	98년도	99.1.1 - 8.31	97년도	98년도	99.1.1 - 8.31	
계	1,099,585	1,213,099	772,154	780	1,066	845	
서울지검	본청	83,408	91,694	57,647	182	209	128
	동부	5,737	7,090	4,057	22	53	32
	남부	6,166	8,513	4,757	27	35	22
	북부	48,850	50,246	28,306	36	40	38
	서부	25,550	28,675	19,482	17	18	20
	의정부	45,739	42,932	31,064	47	30	36
	인천지검	본청	68,377	88,230	51,850	50	69
	부천	15,353	17,484	16,076	6	14	8
수원지검	본청	71,898	75,888	48,744	7	82	65
	성남	23,328	25,143	14,790	2	11	19
	여주	7,004	8,612	6,529	4	3	9
	평택	15,384	12,567	6,923	5	8	6
춘천지검	본청	11,344	10,212	6,365	17	7	9
	강릉	12,182	13,272	8,683	14	14	12
	원주	9,190	8,555	5,084	10	13	12
	속초	4,879	6,141	3,879	4	2	4
	영월	5,554	5,701	3,228	4	6	7
대전지검	본청	30,095	36,791	21,356	23	47	30
	홍성	11,540	13,710	8,363	27	19	3
	공주	4,107	4,628	2,875	3	3	2
	논산	4,763	5,172	4,159	1	2	5
	서산	11,111	11,082	6,446	6	5	8
	천안	16,923	15,671	9,061	13	7	7

청주지검	본청	19,103	22,382	14,181	24	30	16
	충주	7,614	7,816	4,398	5	4	1
	제천	4,644	6,168	3,330	1	5	2
	영동	1,981	2,840	1,919	4	1	1
대구지검	본청	70,444	79,620	55,096	32	57	35
	안동	7,469	8,320	5,793		8	3
	경주	20,075	16,167	4,543	2	5	16
	김천	12,228	13,154	8,103	2	4	8
	상주	4,160	5,933	4,302	2	3	2
	의성	2,360	2,484	2,077			2
	영덕	2,941	3,380	2,088	6		2
부산지검	포항		5,134	10,542			5
	본청	64,679	65,899	47,323	43	43	34
	동부	25,809	29,333	18,633	8	15	13
울산지검		28,267	34,407	23,791	7	16	18
창원지검	본청	33,843	39,091	25,642	31	45	33
	진주	14,253	15,636	10,285	8	12	4
	통영	12,060	12,361	7,632	8	7	3
	밀양	3,786	5,019	3,256	2	2	1
	거창	3,596	4,691	2,879	2	4	3
광주지검	본청	39,965	50,782	32,098	4	48	55
	목포	12,548	13,106	7,265	7	6	8
	장흥	1,980	1,948	1,013	1	1	1
	순천	25,050	26,442	15,539	8	15	4
	해남	3,698	4,825	3,004		3	4
전주지검	본청	17,210	22,230	14,120	20	21	11
	군산	14,384	15,608	9,744	11	21	12
	정읍	6,218	6,886	4,608	3	16	1
제주지검	남원	3,336	4,226	2,512	1		
	본청	16,339	15,407	11,129	11	7	13

1.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무죄판결에 대한 평정결과표(견해차이, 수사미진, 범리오해)

-97. 1. - 99. 6.

○ 무죄평정결과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단위 : 건)

기 간	평 정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이)	과 오 있 음			
			계	수사미진	범리오해	의율착오
97.7-98.6	555	511	44	25	15	4
98.7.-99.6	840	755	85	52	31	2
계	1,395	1,266	129	77	46	6

1. 98. 9. 1.부터 99. 8. 31.까지 형사보상금을 받은 자의 현황

○ 98. 9. 1.부터 99. 8. 31까지 형사보상금을 받은 자의 현황은 붙임과 같음

붙 임 : 형사보상금을 받은 자의 현황

형사보상금을 받은 자의 현황

(기간 : 98. 9. 1. - 99. 8. 31.)

구분	① 무죄 인원	② 무죄율 (%)	③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자		④ ③의 인원중 보상금 신청자		⑤ 보상받은 인원		⑥ 보상액 (천원)
			무죄판결자 가운데	불기소처분 자 가운데	무 죄 판결자	불기소 처분자	무 죄 판결자	불기소 처분자	
소계	143		57	0	21	0	20	0	322,348
서울고검	105	1.99	39	0	10	0	10	0	203,650
대전고검	0		0	0	0	0	0	0	0
대구고검	13	1.31	1	0	1	0	0	0	0
부산고검	12	0.67	9	0	9	0	9	0	102,458
광주고검	13	0.75	8	0	1	0	1	0	16,240
소계	1,463		199	142	111	25	99	13	815,888
서울지검	610	0.19	41	46	20	4	20	0	96,738
인천지검	62	0.39	11	1	11	1	11	1	68,810
수원지검	157	0.13	32	14	11	10	11	10	111,621
춘천지검	62	0.16	9	3	3	0	1	0	6,370
대전지검	128	0.15	22	10	22	4	15	0	109,829
청주지검	34	0.095	8	0	6	0	5	0	36,790
대구지검	149	0.4	31	24	24	1	24	1	300,010
부산지검	68	0.07	12	10	4	0	4	0	30,400
울산지검	18	0.08	6	5	0	5	0	1	720
창원지검	3	0.0005	3	11	3	0	2	0	20,950
광주지검	112	0.12	10	12	3	0	3	0	22,440
전주지검	60	0.13	14	6	4	0	3	0	11,210
제주지검	0	0	0	0	0	0	0	0	0
총계	1,606		256	142	132	25	119	13	1,138,236

41. 무혐의 형사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내역 (97.1.1 ~ 99.8.31)

○ 국회 법사위원회 조찬형위원 등이 요청한 무혐의 형사
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과 지급내역(기간:97.1.1~99.8.31)은
아래와 같음.

무혐의 형사피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내역 (기간 : 97.1.1 ~ 99.8.31)

(단위 : 명 / 천원)

신 청		지 급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55	151,329	37	83,673	

42. 공무원 직무유기 단속실적(97.1.1.-99.8.31.)

(단위 : 명)

구 분	접 수	치 리									수사중
		기 소			불 기 소					이 송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 유예	협의 없음	기소 중지	기 타 (공소권없음, 각하,죄안됨)		
계	3107	64	64		2557	236	1234	14	1073	204	282

40. 98. 9월부터 88.8.31. 현재까지 음란, 퇴폐,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 비호·묵인혐의로 단속된 관련공무원 현황 및 징계처리 내역

○ 음란·퇴폐·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 구속

구 분	98.9.1~99.8.31	
음란도서, 테이프, 물건등 제조, 판매등	건	2,018
	명	2,306 (324)
음란광고물 반포, 전시	건	64
	명	74 (4)
주점, 이발소등의 음란, 퇴폐, 변태영업	건	16,744
	명	18,912 (856)
여관, 안마시술소의 윤락 등	건	1,242
	명	2,553 (337)
직업소개소 변칙 운영등	건	539
	명	817 (182)
무허가유선방송 및 불법비디오 방영행위등	건	108
	명	114 (1)
음란전화방 운영사범 및 기타	건	107
	명	107
총 계	건	20,823
	명	24,884 (1,705)

○ 음란·퇴폐·불법업소에 대한 비호·묵인 혐의로 단속된 관련공무원의 현황

(단위 : 명)

단속	조 치						
	기 소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 타
34 (16)	26 (16)	24 (16)	2	8	6	2	

()는 구속

○ 징계처리는 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행하여지고 있어 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부정행위로 구속된 공직자의 연도별기소율과 일반 범죄의 연도별 기소율 - '97~'99. 8. 31

○ 직무관련공무원범죄중 구속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참고로 97년부터 99. 6. 30.까지 직무관련공무원범죄의 구공판 비율과 전체 범죄의 구공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직무관련공무원범죄			전 체 범 죄		
	총처리인원	구공판인원	비율(%)	총처리인원	구공판인원	비율(%)
'97	3,070	630	20.5	2,110,436	159,482	7.5
'98	3,322	920	27.7	2,328,077	195,523	8.4
'99(1~6)	2,975	466	15.7	1,552,016	110,026	7.1

※ 직무관련공무원범죄관련 통계는 분기별로 산출하고 있어 8월말을 기준으로 한 현황은 작성이 어려움

20.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경찰, 안기부, 기무사, 검찰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등으로 고발된 사건 수와 이들 중 기소, 불기소 및 현재 수사중인 건수 내역,

98. 9. 1 - 99. 8. 31.

총 계	처 리 내 역(인 원)					수 사 중
	소 계	구공판	기소 유예	혐의없음	기 타	
145	120	6	15	75	24	25

* 기무사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1.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법무부(대검찰청 포함)에 접수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접수건수 및 조사사건에 대한 처리내용

98. 10. 1 - 99. 6. 30.

구 분	발 생	처 리 내 역						수사중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무혐의	기소 중지	각하등 기타	
공무원에 의한 침해	621		12	38	244	1	282	44
사인에 의한 침해	400	78	12	28	94	35	123	30
계	1,021	78	24	66	338	36	405	74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는 경찰관, 교도관, 기타 공무원 등의 형법상 직권남용,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감호자간음, 경찰관 직무집행법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란 형법상 학대, 존속학대, 아동학사,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 약취·유인·추행·간음·영리약취·유인, 부녀매매, 단순 폭행이 아닌 린치사건중 중대한 사건, 언론 또는 출판물을 이용한 악의적인 명예·신용침해사건중 중대한 것등을 포함합니다.

* 인권침해사건은 분기별로 통계를 내고 있으므로 부득이 98. 10. 1 - 99. 6. 30.간의 통계로 대신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권침해 근절대책관련(97. 9. 1 - 98. 8. 31 / 98. 9. 1 - 99. 8. 31)

- 가혹행위, 고문등 적발조치 현황
- 족쇄등 인권침해 도구사용 적발조치 현황

○ 가혹행위, 고문등 적발조치 현황

기 간	발 생	처 리 내 역								수사중
		소계	기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공소 권무	각하	기소 중지	기타	
97. 9. 1 -98. 8. 31	432	373	16	27	220	9	82	5	14	59
98. 9. 1 -99. 8. 31	145	120	6	15	75	0	19	2	3	25

○ 족쇄 등 인권침해 도구사용 적발조치 현황

- 98. 11. 25. 경남 함양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 당시 경찰 자체에서 조사하여 책임자인 수사과장을 인사조치하고 족쇄등 인권침해 도구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밖에 족쇄등 인권침해 도구를 불법 사용한 사례는 적발된 바 없습니다.

10.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한 건수와 내용 및 처리결과

○ 고소·고발장 접수 및 처리현황

98. 1. 1 - 99. 8. 31.

년도별	접수	처 리 내 역					수사중
		소 계	구공판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 타 (각하등)	
98년	355	318	8	27	166	117	37
99년 (1. 1- 8. 31)	145	120	6	15	75	24	25
계	500	438	14	42	241	141	62

(단위 : 명)

○ 진정서는 내용별 별개의 통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직원의 비위사실 적발 및 징계처분 내역(연도별, 사무소별)

○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무소별 출입국관리직원의 비위사실 적발 및 징계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소별	연도별		98년(9-12)		99년도(1-8)	
	9	10	11	12	1	2
계	9	0	3	0	6	0
김포사무소	6	0	견책	1	파면	2
					해임	2
					감봉	1
서울사무소	2	0	견책	2	0	0
김해사무소	1	0	0	0	파면	1

27. 공무원 범죄의 유형별 현황 및 처리내역

98. 9. 1 - 99. 8. 31

유형별	접 수	처 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기 타	이송
직무유기	1,372	29		196	590	13	339	88
직권남용	689	4		4	251	6	256	101
독직폭행	434	5		27	217	7	50	65
뇌물수수	1,537	847		408	99	52	17	31
허위공문서작성등	1,419	174	146	394	321	12	176	89
업무상횡령배임등	441	71	52	80	126	7	50	8
기 타	17,906	1,003	7,281	2,107	1,865	233	4,604	265
계	23,798	2,133	7,479	3,216	3,469	330	5,492	647

(단위)

9. 대검찰청 및 각급 하위청별 징계받은 검찰공무원 현황
(징계사유별, 징계내용별로 구분('97.9~'98. 8 / '98.9~'99.8))

○ 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7. 9월 ~ '98. 8월 사이 징계

- 해임 4명, - 정직 1명
- 감봉 1명 - 견책 2명

2. '98. 9월 ~ '99. 8월 사이 징계

- 파면 1명, - 해임 1명
- 정직 3명 - 감봉 7명
- 견책 2명

※ 구체적인 징계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사법경찰 구속사례 및 사유 - 97.1.1-99.8.31

=====

- 위 기간동안 구속된 사법경찰관은 총 151명입니다.
- 구속사유는, 뇌물수수 97명, 허위공문서작성 13명, 직권남용 5명, 직무유기 5명, 공문서위·변조 4명, 업무상횡령 3명,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명, 공갈 2명, 기타 20명입니다.

9. 외국인 참정권부여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또는 관련 보도자료 사본

=====

-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한 입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지방자치법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선거관계법률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임
- 따라서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에 대한 보도자료등 관련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29. 99. 1. 16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서 밀입국한 조선족 7명이 탈주한 사건의 경위 및 사후처리(검거여부와 관련자 인사조치 등) 내역

○ 99. 1. 16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중이던 중국인(조선족) 7명이 도주한 사건의 사고경위 및 사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경위

- '99. 1. 16. 18:00 저녁식사후 보호실에 수용중이던 중국인 7명이 18:30 경 방 출입문 아래쪽 틈새에 손을 넣어 문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구부러 제치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 경비근무자 2명이 발견하여 1명은 보호실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나머지 1명이 직원비상 소집과 경찰협조를 구하는 사이에
- 식당으로 통하는 철문을 밀어 제치고 식당으로 들어가 식당내 환기통을 뜯어 낸 다음 그 구멍을 통하여 사무소 뒷편 담장을 넘어 도주하였음

▷ 사후처리 내역

- 탈주자 검거
'99. 9월 현재 2명은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고, 나머지 5명은 미검거
-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내용
소장, 경비과장 및 당일 감시근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 보호시설 보완
 - 자체 조사결과 보호실 시설물의 부실시공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실시
 -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강화

30.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국적별, 연령, 성별, 입국사유, 체류기간)

○ '99. 8. 31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국적별, 연령, 성별, 입국사유,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적별

국적 계	중국	몽골	방글라 데 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파키 스탄	기타
126,043	64,232	10,416	9,783	8,184	5,249	4,656	3,806	19,717

- 연령별

연령 계	24세이하	21~30	31~40	41~50	51세이상
126,043	1,211	38,145	47,566	24,340	14,781

- 성별

성별 계	남	여
126,043	81,519	44,524

- 입국사유

자격 계	단기종합	관광통과	사증면제	단기상용	단기취업	산업연수	일반연수
126,043	41,303	5,577	15,033	27,164	354	29,028	267
		회화지도	기업투자	방문동거	거주	동반	기타
		414	180	4,712	177	293	1,541

- 체류기간

기간 계	3월이내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이상
126,043	18,50911	14,115	17,789	25,841	49,789

36. (2) 외국인범죄와 관련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미군범죄 발생 내용별 통계 및 미군범죄 기소율, 재판결과

○ 미군범죄 발생 내용별 통계

연도	구분	계	도로	교통사고	폭력행위등처	관세법	절도	기타
			교통법 위반	처리특례법 위반	벌에관한법률 위반	위반		
'98.9.	건	555	281	129	92	1	25	27
'99.8.	명	617	281	129	130	1	37	39

○ 한·미 SOFA사건 재판권행사율

연도	구분	발생		미군인	미군인	전체 SOFA 사건중행사(율)	
		계	미군인	미군속등 행사(율)	교통사범이외 범죄 행사(율)		
'98.9.	건	738	555	183	22 (4.0)	14 (9.7)	205 (27.8)
'99.8.	명	834	617	217	35 (5.7)	27 (13.0)	252 (30.2)

○ 미군 재판권행사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처분	수사중	계
'98.9. ~ '99.8.	11	5	7	12	35

○ 미군범죄 기소율

-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많아 산정곤란

○ 미군범죄 재판결과

- 구공판 사건

연도	구분	기소인원	집행유예	벌금	미확정
		'98.9. ~ '99.8.	11	6	.

- 구약식 사건은 모두 벌금선고

1.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와 외국인 노동자 대한 고용주의 범죄 및 체불 임금 현황(98 - 현재)

=====

- 98.1.1~99.8.31기간중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업 등 노동관계 범죄는 없으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범죄 및 체불임금 현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붙임 :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 입건처리 현황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체불임금 현황

< 붙임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 입건처리 현황

기간	입 건			처 리							수사중
	계	고소 고발	인지	계	기소	불 기 소					
						소계	기소 유예	협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타	
계	59	14	45	48	32	16	9			7	11
'98	17	2	15	17	12	5	3			2	
'99 (8.31까지)	42	12	30	31	20	11	6			5	11

(단위 : 명)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체불임금 현황

(단위 : 건,명,천원)

구분	신고접수			청산			미청산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청산율)	건수	인원	금액
'98	312	527	692,779	160	245	277,145 (40%)	152	282	415,634
'99 상반기	101	161	307,974	55	91	117,015 (38%)	46	70	190,959
대비 (%)	-67.6	-69.4	-55.5	-65.6	-62.9	-57.8	-69.7	-75.2	-54.1

30. 불법체류자 수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98~현재)

○ '98년도 및 '99년 8월말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체류자 현황

국적 연도	계	중국	몽골	방글라 데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파키 스탄	기타
98.12	99,537	55,628	5,550	7,462	6,404	2,372	3,713	3,098	15,310
99. 8	126,043	64,232	11,491	9,783	8,184	5,249	4,656	3,806	18,642

- 불법체류자 대책

▷ 불법체류외국인 추이

- 불법체류외국인 98년말 IMF사태 직후 9만여명으로 감소
- 최근 국내 경제사정 호전에 따라 12만여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
- ※ 99. 8월말 현재 불법체류자 12만 6천여명 중 중국인이 51%를 차지

▷ 불법체류외국인 증가원인

- 문호개방 확대로 외국인의 입국 용이
- 3D업종에 대한 국민의 취업기피로 영세업체의 인력난 심화
- 인근 중국·동남아국가와의 임금격차로 저임 노동인구의 대량유입
- 한·중 수교이후 친척방문 등 중국동포의 입국 지속적 증가
-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업체 이탈 증가
- 여권 위변조, 해상밀입국 등으로 불법입국자 다수 발생

▷ 불법체류외국인 관리상의 문제점

- 정부의 관광진흥 및 문호개방 확대로 공항에서의 입국봉쇄에 한계
- 경제논리에 따라 중소기업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하여 탄력 대응
- 단속인력 및 외국인보호시설 부족으로 강력단속 곤란

▷ 불법체류외국인 관리 대책

- 불법체류외국인의 신규유입 적극 차단
 - 재외공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발급심사 강화
 -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국민에 대한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면제로 자진출국 유도
 - 자진출국기간 설정, 자진출국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면제
 - 불법고용주 추적조사 생략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력 단속실시 및 고용주 처벌 강화
 - 자진출국기간 설정과 병행하여 전 업종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 실시
 -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한 자는 형사처벌
- 단속인력 보강 및 외국인보호시설 확충
 - 관계부처와 협의, 외국인 동향조사 전담요원 증원 추진
 - 단속하여 강제출국시 까지 수용할 외국인 보호시설 확충
 - 경기도 화성에 396명 수용규모의 외국인보호시설 신축(2000.10완공)
- 불법체류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연수업체·고용업체 등 초청 간담회 개최, 불법고용 자제 홍보
 -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대책 강구 협조

31. 추방한 불법체류자 수와 국가별 인원(98~현재)

○ '98년 이후 '99년 8월말 현재까지 출국조치한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 연도	계	중국	필리핀	러시아	방글라 데시	파키 스탄	태국	네팔	기타
계	85,809	28,555	9,749	1,013	5,798	4,052	6,596	1,280	28,766
98.1-12	74,778	22,970	9,262	638	5,468	3,769	6,321	1,183	25,167
99.1- 8	11,031	5,585	487	375	330	283	275	97	3,599

21. 외국인 불법체류관련 - 98. 1. 1~ 99. 8. 31

- 외국인 입국자 현황(국적별), 중국인 장기체류자 현황,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 적발 현황

□ 외국인 불법체류관련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입국자 현황(국적별)

연도 국적	'98년(1-12)	'99년(1~8)
계	4,109,997	2,951,844
일본	1,965,410	1,422,981
미국	506,091	333,824
중국	218,593	205,366
홍콩	229,139	167,931
타이완	153,397	105,695
필리핀	166,080	127,840
영국	52,160	35,909
독일	46,590	31,080
캐나다	46,706	34,395
싱가포르	92,732	40,693
타이	50,179	40,523
프랑스	25,996	19,305
기타	556,924	386,302

○ 중국인 장기체류자 현황

98년말 현재	99년 8월말 현재
30,938명	35,433명

※ 장기체류자라 함은 91일 이상 체류하는 자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 임

○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 적발 현황

업종별 계	건설	일반 기계	섬유	고무 프라 스틱	염색	전기 전자	가구	가방 신발	석유 화학	피혁	기타
10,092	3,104	1,073	800	581	465	417	374	249	148	115	2,766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체별 현황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발 당시 불법고용주의 업종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10. 일본 및 재외 한국인 참정권(투표권, 선거권 포함)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및 현황

□ 법무부의 입장

○ 재외한국인 일반

- 정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우리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 ※ 우리 정부도 현재까지 국내 정주외국인에 대하여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음

○ 재일동포의 경우

- 그러나, 재일동포의 경우 ▲일제하 강제적·반강제적으로 도일하였다가 생활근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본에 정착하였다는 역사적 배경, ▲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식으로 생활하면서 납세의무 등 일본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참정권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일동포의 참정권 현황

- 현재까지 지방참정권을 포함한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① '95. 2. 28.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고,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판시하였고, ② 99. 7. 현재 12개 政令都市 전부가, 47개 都道府縣의회 중 34개 의회가, 691개 一般市 및 自治區중 516개 市·區가 정주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서를 채택(전체 자치단체 비율로는 42.39%)하였으며, ③ '98. 10. 6. 民主黨,

新黨平和(現 公明黨), 改進黨가 衆議院에 「永住外國人에 대한 地方公共團體의 議會의 議員 및 長의 選舉權 等の 附與에 관한 法律案」을 共同제출하여 현재 公職선거법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임.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많은 재외 동포들을 적용배제시킨 차별적 법률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법무부 견해와 보완대책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부의 견해

- 당초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함
- 그러나 이러한 「혈통주의」 입법은 ▲ 국제법기준에 반하고, ▲ 특히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등 자국내 소수민족의 조직화를 경계하는 나라들과 외교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 실제로 중국정부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 아일랜드, 그리스, 폴란드, 터키 등에서는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과거국적주의」로 수정한 것임.
-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정부가 그들에 대해 우리 동포임을 포기한 것을 선언한 것은 아님
-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동포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하였고, 대통령께서도 이 법의 공포에 즈음하여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것임.

■ 보완대책

- 국회권고안과 대통령 지시사항의 요지
 - 중국동포들의 한국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함
 -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활안정과 귀국보장, 민간지원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강구
 - 국내체류 조선족들을 우리 동포로 간주하는 정책 수립·시행
- 법무부 대책반 구성
 - 법무부내의 재외동포법 주무과인 국제법무과와 국적주무과인 법무과, 출입국 주무과인 출입국 기획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운영
 - 중국동포 1세의 국적취득과 출입국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국동포의 출입국과 국적취득에 관한 광범위한 개선안 마련중
- 정부대책반 구성운영 계획
 - 법무부(안) 확정후, 국정원, 외교부, 행자부등 관련부처들과 공동대책반 구성·운영 예정
 - 이 대책반에서 ▲ 국적취득과 출입국에 관한 법무부(안), ▲ 국내 불법체류동포들의 생활안정, 민간지원단체들에 대한 지원, 국내체류 조선족들을 우리 동포로 간주하는 정책 수립·시행 등 법무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방안 강구

74. 98년 9월부터 99년 8월 현재까지 청소년범죄 현황 및 대처 방안(연령별, 범죄내용별, 처리결과별)

1.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소년 범죄자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인원	구성 비 (%)	인원	구성 비 (%)	인원	구성 비 (%)	인원	구성 비 (%)
'96	146,986	4,660	3.2	38,084	25.9	53,130	36.1	51,112	34.8
'97	164,182	4,093	2.5	42,786	26.1	61,622	37.5	55,681	33.9
'98	161,277	1,886	1.2	35,964	22.3	59,833	37.1	63,594	39.4

2. 청소년범죄 내용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강력사범	폭력사범	재산사범	교통사범	기 타
'96	146,986	4,566	53,165	34,044	39,378	15,833
'97	164,182	5,653	62,218	39,605	45,622	11,084
'98	161,277	6,134	57,080	45,561	41,665	10,837

※ 위 자료들은 1년 단위로 작성하는 통계로서 '98. 9. - '99. 8. 까지의 통계자료는 산정할 수 없어 최근 3년간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3. 청소년범죄 처리결과별 현황('98.9.1.-'99.8.31.)

(단위 : 명)

구분 범죄별	집수	처 리								미제
		기 소		불 기 소			이 송			
		구공판	구약식	협의 없음	기소 유예	기타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계	
청소년 범죄	160,933	18,177	36,498	3,839	63,373	11,466	24,282	1,983	159,618	1,315

4. 청소년범죄 대처방안

○ 학교폭력, 청소년범죄는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면서 교내폭력, 학생상대 범죄 등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화 되었으며

○ 향락산업의 성행,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 등 청소년의 탈선, 타락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의 폭발적 증가로 청소년을 악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의 만연되어 검찰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7. 9. 부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운동은 「밝고 맑고 바른」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민간자원봉사위원회와 유관기관이 일체가 되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으로써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 우선 대검찰청에 중앙추진본부를, 각 지검·지청에 지역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대검찰청과 전국 53개 검찰청에 청소년보호전화(1588-2828)를 설치·운영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 모든 일선 검찰청에 검찰, 경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2만여 민간 자원봉사위원들이 학교 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등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시설인 「푸른쉼터」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하고, 교내폭력

등 위법 학생이 없는 학교를 「준법우수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 전문 상담위원들의 상담을 비롯하여 사회봉사활동, 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 등 다양한 심성수련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통하여 맑고 곧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 각 지검별로 소년범 기소유예제도(기소유예전 교육선도제)의 전국적 실시현황과 그 결과

○ 전국 지검별 소년범 기소유예 현황('99. 1. 1.-6. 30)
(단위 : 명)

내역 지검별	기소유예 소년	선도유예 소년	비고
계	26,974	3,586	
서울	7,336	714	
인천	1,814	529	
수원	2,071	238	
춘천	784	133	
대전	2,036	279	
청주	635	110	
대구	3,437	398	
부산	2,190	150	
울산	483	113	
창원	2,071	271	
광주	2,569	329	
전주	1,032	262	
제주	516	60	

19. 학교폭력사범과 관련하여 ('97.1.1.-'99.8.31.)

- 학교폭력사범 단속운영현황 및 대처방안

1. 학교폭력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간	계	구속	불구속
'97	39,883	7,842	32,041
'98	37,374	5,442	31,932
'99(1-8)	23,429	2,820	20,609

2. 학교폭력사범 대처방안

○ 학교폭력, 청소년범죄는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면서 교내폭력, 학생상대 범죄 등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화 되었으며

○ 향락산업의 성행,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 등 청소년의 탈선, 타락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의 폭발적 증가로 청소년을 악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의 만연되어 검찰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97. 9. 부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운동은 「밝고 맑고 바른」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민간자원봉사위원과 유관기관이 일체가 되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확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으로써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 우선 대검찰청에 중앙추진본부를, 각 지검·지청에 지역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대검찰청과 전국 53개 검찰청에 청소년보호전화(1588-2828)를 설치·운영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

○ 모든 일선 검찰청에 검찰, 경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2만여 민간 자원봉사위원들이 학교 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 등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시설인 「푸른쉼터」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하고, 교내폭력

등 위법 학생이 없는 학교를 「준법우수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 전문 상담위원들의 상담을 비롯하여 사회봉사활동, 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 등 다양한 심성수련 및 단체활동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여 나가 맑고
곧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겠습니
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1. 추진배경

- 학교폭력, 청소년범죄의 급증 및 심각화
 - 교내 폭력, 학생 상대 범죄,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의 급격한 증가
 - 청소년 범죄의 집단화, 조직화, 흉포화, 저연령화 경향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화
- 각종 유해환경의 만연
 - 향락산업의 성행,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 등 청소년의 탈선, 타락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의 폭발적 증가
 - 청소년을 악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영업의 만연
- 사회적 감시체제의 이완
 - 학교, 학부모, 기성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지도력 상실
 - 전통적 공동체 의식의 약화 및 개인주의의 팽배에 따른 사회적 통제체제 이완

2. 목 표

○ 「맑고 맑고 바른」 청소년 육성

- 청소년 범죄, 유해환경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소년기의 폭력, 비행, 범죄예방을 통하여 성인범죄자로 이행을 예방하는 미래지향적 범죄예방활동 지향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죄억제 정책 추진

- 민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성 사회의 책임의식 확산

-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민주화, 도덕성 향상에 기여

○ 단속과 예방이 조화를 통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

-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유해환경에 대하여는 검찰의 주도 하에 강력한 억제활동 시행

- 우범, 불우 청소년의 선도·지원, 유해환경의 책임자에 대한 계도를 통한 범죄의 근본적 예방활동의 병행

3. 추진 체계

○ 검 찰

- '97. 9.부터 운동개시 및 대검찰청 중앙추진본부 및 전국 일선 검찰청의 지역 추진본부가 단속활동 시행 및 예방·선도활동의 조정 등 운동추진 주도

- 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접수, 자체 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의 발굴 및 신속, 적절한 처리

- 유해환경은 철저히, 강력한 단속, 청소년 범죄자는 선도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탄력적 처리

○ 자원봉사조직

- 검찰청 관할 구역 별로 지역 지도자,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지역 협의회 구성

- 민간의 차원에서 검찰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 범죄 예방 및 유해환경 감시, 계도 활동 수행

- 순수 민간활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99. 5. 8.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설립

○ 유관기관 대책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경찰 등 수사기관 등 청소년문제 유관기관의 협력 추진

- 기관별 청소년 관련 활동의 유기적 조화, 분담 및 공동 활동 수행

4. 추진 실적('97. 9. - 99. 7. 31)

○ 신고전화 운영

- 접수 : 25,695건

- 처리 : 24,553건 (처리율 95.5%)

○ 합동단속실적

- 청소년범죄 : 총 90,573명 단속, 9,815명 구속

- 유해환경사범 : 총 88,759명 단속, 5,040명 구속

- 윤락상대방 단속 : 총 909명 단속, 114명 구속

○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 16,533명 귀가조치

○ 예방 및 선도활동 실적

- 우범지역 순찰 : 1,380,464회에 걸쳐 2,778,999명 참여

- 유해업소 점검 : 909,797회에 걸쳐 1,992,327명 참여

- 교육 및 강연회 : 1,105,413회에 걸쳐 2,778,999명을 대상으로

실시

- 면담·상담 : 57,856회에 걸쳐 106,539명을 대상으로 실시

- 선도프로그램 : 1,713회에 걸쳐 293,370명을 대상으로 실시

- 결연 및 지원 : 54,886회에 걸쳐 97,028명을 대상으로 실시

○ 푸른쉼터 지정

- 44개청 83개소

○ 준범우수학교 선정

- 39개청 108개 학교 선정

5.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設立

○ '99. 4. 29. 발기인대회 개최 및 '99. 5. 8. 설립등기 필

○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여 독자성과 영속성 확보

○ 「민간주도로, 정부와 함께」 하는 전향적인 새로운 청소년 보호운동 전개

○ 역점사업

-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감시활동

-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국민적 참여의식 고취

- 우범·불우 청소년의 선도·지원사업의 확대

-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 청소년 보호운동의 국제적 확산 및 협력 강화

6.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제포럼 개최

- '99. 6. 22.~24. 웨라톤워커히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태리, 캐나다 등 29개국 61명의 청소년 전문가 참석
- 세계각국의 청소년범죄 실태 및 억제정책,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
-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력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발표, 토론 내용을 「운동」에 적극 참고함으로써 발전 도모

7. 향후계획

- 개정 청소년보호법 철저 집행
 - '99. 7. 1부터 보호대상 연령, 금지행위 유형의 명확화,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
 -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전국 청에 '99. 7. 1부터 2달간 집중제도 기간 설정 및 기간 종료 후 단속강화 등 지침 시달
 - 계도기간 운영

- 계도기간 중 개정 법률내용 및 새로운 금지유형 적극 홍보 및 계도
- 종전부터 금지대상인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활동 지속
- 계도기간 종료 후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운영에 자원봉사위원의 적극참여

○ 청소년 문제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 「국민재단」 전문위원 영입 등 연구활동 촉진대책 마련

○ 「국민재단」 지원활동 강화

- 청소년보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위원의 「국민재단」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범국민적 참여 촉진
- 기금모금, 사업예산 확보 등 재정확충에 협력
- 또래 상담자 육성, 대학교 1과 1교 결연 등 재단사업에 적극 지원

- 학교폭력사범 사건처리현황(지검별 처리결과)

구 분 지검별	1997년		1998년		1999년 (1-8)	
	단 속	구 속	단 속	구 속	단 속	구 속
계	39,514	7,795	37,374	5,442	23,429	2,820
서울	14,702	2,906	12,167	1,445	11,937	903
인천	1,645	427	1,481	206	1,122	169
수원	2,676	628	3,280	646	1,760	230
춘천	1,387	266	1,203	194	769	122
대전	3,194	566	1,919	367	786	107
청주	1,165	222	1,311	160	871	94
대구	5,748	1,306	4,928	883	2,599	359
부산	3,798	710	2,928	490	1,742	260
울산			854	163	761	120
창원	997	152	2,323	270	1,038	103
광주	1,343	296	2,864	301	1,465	165
전주	2,419	261	1,563	234	906	152
제주	450	55	563	83	373	36

20. '99년도 검찰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성과 (안심이, 2828신고실적 등)('99. 1. 1 - 7. 31)

○ 신고전화 운영

- 접수 : 8,312건

- 처리 : 7,170건 (처리율 86.3%)

○ 합동단속실적

- 청소년범죄 : 총 49,023명 단속, 5,003명 구속

- 청소년 유해사범 : 총 42,455명 단속, 2,086명 구속

- 윤락 상대방 단속 : 총 582명 단속, 68명 구속

○ 가출청소년 귀가조치

- 5,857명

○ 생활지도, 유해업소 점검활동 실적

- 우범지역 순찰 : 총 232,769회, 1,380,464명 참여

- 유해업소 점검 : 총 138,568회, 909,797명 참여

○ 예방 및 선도활동 실적

- 교육 및 강연회 : 4,875회에 걸쳐 1,105,413명을 대상으로 실시

- 면담·상담 : 17,643회에 걸쳐 57,856명을 대상으로 실시

- 결연·지원 : 4,710회에 걸쳐 54,866명을 대상으로 실시

○ 푸른섬터 지정

- 44개청 83개소

○ 준법우수학교 선정

- 39개청 108개 학교 선정

7.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 및 교육내용

=====

- 검찰에서는 '9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98. 9. 15.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에 관한 지시」를 전국 일선 검찰에 시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 위 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가정폭력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형사처벌에 앞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게 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폭력행위자를 격리조치 시키는 한편, 가정내부의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과의 마찰과 오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경교양을 실시하고
- 가정폭력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폭력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폭력 피해자와 신고의무자들이 즉시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건수, 처리내용, 보호처분별 집계 건수, 임시조치 청구율, 불처분 건수, 불처분 이유(지검별 통계와 전국 통계)

○ 가정폭력사범 발생 및 처분결과
가. '98년도(7-12)

(단위 : 명)

구분 지검별	접수	처 리							미제
		계	기 소		불 기 소		가정보 호처 분	기타	
			구약식	구공판	기소 유예	기타			
계	1,455	1,400	205	257	320	106	495	17	55
서울	405	380	23	43	90	18	199	7	25
인천	45	41	6	4	16	1	13	1	4
수원	126	124	16	10	12	2	83	1	2
춘천	75	75	25	22	16	9	3	0	0
대전	115	111	12	23	22	5	44	5	4
청주	3	3	1	0	0	1	1	0	0
대구	89	89	9	33	31	4	11	1	0
부산	257	248	48	48	59	32	61	0	9
울산	1	1	0	0	0	0	1	0	0
창원	38	38	13	9	3	1	12	0	0
광주	139	136	24	16	22	27	47	0	3
전주	85	82	18	27	15	3	18	1	3
제주	77	72	10	22	34	3	2	1	5

나. '99년도(1-8)

(단위 : 명)

구분 지검별	접수	처 리						미제	
		계	기 소		불 기 소		가정보 호처 분		기타
			구약 식	구공 판	기소유 예	기타			
총 계	4,883	4,780	536	692	1,511	250	1,707	84	103
서울	1,663	1,632	124	170	532	105	672	29	31
인천	349	343	40	72	145	7	79	0	6
수원	303	301	18	26	30	6	218	3	2
춘천	201	196	40	54	74	17	7	4	5
대전	292	283	27	53	56	12	126	9	9
청주	13	13	1	2	3	1	6	0	0
대구	608	600	85	98	286	38	85	8	8
부산	624	612	110	92	187	24	184	15	12
울산	50	43	0	0	0	0	42	1	7
창원	101	99	8	15	16	3	53	4	2
광주	302	298	38	40	58	22	134	6	4
전주	230	224	17	37	64	9	95	2	6
제주	147	136	28	33	60	6	6	3	11

○ 임시조치 청구 건수 및 청구율

가. 전국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접 수	청 구	청구율(%)	비고
'98(7-12)	1,455	335	23.0	
'99(1-8)	4,883	1,202	24.6	
계	6,338	1,537	24.3	

나. 지검별 청구현황

(단위 : 명)

지검별 구분	연 도 별		
	계	'98(7-12)	'99(1-8)
계	1,537	335	1,202
서울	855	191	644
인천	128	30	98
수원	211	39	172
춘천	36	1	35
대전	58	8	50
청주	1	0	1
대구	19	0	19
부산	58	17	41
울산	6	2	4
창원	23	9	14
광주	66	12	54
전주	95	26	69
제주	1	0	1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98. 7. 1.부터 시행되어 '98. 7. 분부터 산출하였습니다.

27. 체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이래, 체포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총 건수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 체포단계에서도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구속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8. 31. 현재 국선변호인 선임 실적은 총 28명 임을 알려드립니다

26. 현재 긴급체포에서는 적부심 심사 규정이 없어 그 적법성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대한 법무부의 운용 방안과 이후 대책안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를 문리 해석하면 긴급체포된 자는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없는 것처럼 볼 여지도 있으나
- 대법원은 긴급체포된 자도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고(1997. 8. 27.자 97모 21 결정)
- 현재 실무도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시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위 조문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체포·구속 과정에서 피의자가 적부심 심사 등을 이유로 열람 혹은 등사할 수 있는 문서의 목록

-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하면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사기록을 법원에 송부합니다.
- 피의자가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서류는 위 지침 제3조에 따라 수사 중인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검찰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사건 통계(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일자, 청구내역, 처리결과, 기간 : 97. 1. - 99. 8. 31.)

○ 국회 법사위원회 조찬형위원 등이 요청한 1997년도이후 검찰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은 각 1건, 행정소송은 3건이며 이에 대한 현황은 붙임과 같음

○ 기록열람·등사 이의신청 등 현황(1997. 1. 1-1999. 8. 31)

내 용 구 분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일자	청구내역	처리결과
이의신청	장기욱 (변호사)	부산지검검사장	97. 2.14	형사확정기록인증 등본요구	98. 2.17 불허통지
행정소송	장기욱 (변호사)	부산지검검사장	98. 4.11	형사확정기록인증 등본요구	98. 7. 6 소취하
	반동구	대전지검검사장	98. 9.29	형사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신 청거부 취소	99. 2. 9 소 각 하
	김영훈	인천지검검사장	98. 7.28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계 류 중 (서울고법)
헌법소원	김안립	부산고검 검사	99. 2.19	수사중기록 등사 요구	계 류 중
기 타 (행정심판)	반동구	대전지검검사장	98. 1.31	형사기록전부에 대하여 열람등사 하도록 재결	98. 3.16 기 각
	이남진 (변호사)	수원지검검사장	99. 5. 6	등사일부불허처분 취소심판	99. 7. 5 서울고검 기 각
기 타 (진 정)	김광순	부천시청지청장	99. 7. 6	기록전부에대하여 열람등사하도록하 라는 진정	처 리 중

73. '98.9.~'99.8.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처방안

○ 개인정보 유출 사범의 단속실적

(단위 : 인원)

연도별 \ 구분	계	구속	불구속
97	326	63	263
98	156	21	135
99(1~8)	236	52	184

※ 적용법률별 범죄유형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직원이 임의로 개인의 정보를 누설등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타인으로부터 사생활등의 조사를 의뢰받고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 조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개인의 범죄경력조회서등을 타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조회하여 알려주거나 입수하여 행사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 최근 사회 각 부문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척됨에 따라 개인

의 각종 정보가 전산처리되고 있고, 이들 전산정보중 일부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 검찰에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유출행위를 색출, 엄단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사법 처리받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법 처리 현황(위반 법률, 사업주명, 혐의사실, 처리내역, 공소장 사본 등)(98. 9. 1~99. 8. 31)

- '98. 9. 1~99. 8. 31.간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업주 및 근로자는 모두 58,678명에 이릅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법처리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혐의 사실, 공소장 등 구체적 처리현황은 그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여 붙임 사법처리 현황표로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노동관계법위반사법 사법처리 현황

노동관계법위반사법 사법처리 현황

('98.1.1. ~ '99.8.31) (단위 : 명)

구분 기간	죄 명	입 건			기소	불기소
		계	구속	불구속		
계	계	58,678	29	58,649	29,072	20,54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961	4	1,957	99	1,59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4		4	3	1
	노동조합법위반	60		60	1	33
	근로기준법위반	56,555	25	56,530	28,965	18,82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위반	98		98	4	95
	소 계	35,588	15	35,573	17,856	11,988
'9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165	2	1,163	76	88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3		3	3	
	노동조합법위반	24		24	1	22
	근로기준법위반	34,310	13	34,297	17,773	11,00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위반	86		86	3	81
	소 계	23,090	14	23,076	11,216	8,560
99.1.1. ~8.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796	2	794	23	71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1		1		1
	노동조합법위반	36		36		11
	근로기준법위반	22,245	12	22,233	11,192	7,81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률위반	12		12	1	14
	소 계					

45. 출국금지자 통계(97. 1 ~ 99. 8. 31) - 사건별, 월별

○ 97년 1월 이후 99년 8월말까지 월별 출국금지자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별 통계는 산출이 불가능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월별	'97년	'98년	'99년(1~8)
계	8,382	11,760	5,160
1	339	362	301
2	275	473	172
3	312	383	328
4	388	586	426
5	299	558	267
6	382	599	283
7	431	556	479
8	381	471	224
9	367	639	이하여백
10	361	622	
11	349	264	
12	421	261	
해제건 수	4,077	5,986	2,680

29. 기소전 보석이 시행된 이래 '기소전 보석'이 실행된 총건수 및 혐의
 사실별 분류

○ 「기소전 보석」 실행건수 및 죄명별 분류

(98. 9. 1. ~ 99. 8. 30.)

죄명별	건(명)	건(명)	비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1(304)	
간 통		18(18)	
도 박		61(76)	
사 기		240(240)	
상해와폭행		21(22)	
문서에관한죄		57(57)	
장 물		22(22)	
절 도		232(238)	
횡령, 배임		96(97)	
변호사법위반		13(14)	
부정수표단속반		4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711(731)	
기 타		1,121(1,142)	
계		2,937(3,006)	

30. 98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보석신청과 보석(기소 후)이 허가
된 총 건수, 혐의사실별 분류

=====

○ 98년 1월부터 99년 8월 31일까지의 보석신청과 보석(기소 후)
인원 및 혐의사실별(죄명별) 분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 1. 고·지검별 보석신청 및 보석허가(기소 후) 인원 1부
2. 혐의사실별(죄명별) 보석신청 및 보석허가(기소 후) 인원 1부

1. 고·지검별 보석신청 및 보석(기소 후) 허가인원

기간 청별	98년도		99. 1. 1. - 8. 31.	
	신 청	허 가	신 청	허 가
계	37,746	18,878	21,015	10,276
서울고검	298	66	193	66
대전고검	54	6	36	4
대구고검	42	12	26	4
부산고검	72	22	67	13
광주고검	86	21	101	47
서울지검	9,611	4,738	5,635	3,024
인천지검	3,631	1,612	955	461
수원지검	4,177	2,066	2,607	1,179
춘천지검	1,603	975	1,013	560
대전지검	2,338	1,071	1,007	420
청주지검	1,073	612	523	262
대구지검	3,810	2,238	2,342	1,155
부산지검	2,689	1,280	1,962	919
울산지검	851	457	544	286
창원지검	2,127	959	1,221	500
광주지검	3,108	1,636	1,687	841
전주지검	1,688	855	869	409
제주지검	488	252	227	126

2. 혐의사실(죄명별) 보석신청 및 보석허가(기소 후) 인원

청별 \ 기간	98년도		99. 1. 1. - 8. 31.	
	신 청	허 가	신 청	허 가
계	37,746	18,878	21,015	10,276
병역사범	159	82	92	54
경제사범	6,033	3,185	4,185	1,932
환경사범	842	482	398	227
보건사범	786	385	462	227
마약사범	1,047	455	694	303
폭력사범	7,807	3,904	4,723	2,386
퇴폐풍조사범	2,433	1,311	1,180	604
교통사범	9,188	5,026	4,569	2,467
홍약사범	1,953	760	1,224	443
공안사범	403	227	123	65
기타사범	7,095	3,061	3,365	1,568

5. 탈북자 현황과 대책 및 지원방안

=====

- 통일부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해외체류 탈북자는 약 1만명 내지 3만명으로 추산되며 국내에는 99. 10. 15. 현재 1,037명이 탈북자로 인정되어 그 중 826명이 국내에 거주중이라고 하며 (211명은 사망 또는 이민), 구체적인 자료는 주관부서인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외 탈북주민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와 협조하여 해당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향후 유관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보장 및 정착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 인권옹호단체에 대한 감독 현황

- 근거 :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법무부령 제136호)

- 감독현황

감독사항	이사선임등의 보고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사업보고	감사(지도점검)
인권단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회	2회	6회	1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	2회	6회	.
한국인권옹호협회	1회	2회	6회	.
부산가정법률상담소	1회	2회	6회	1회

9. 98. 1. 이후 99. 9. 현재까지 연도별 전국 각 지검, 지청 등에 운영중인 인권상담소 운영현황 및 실적

○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69. 7. 21. 법무부령 제135호)에 의하여 각 지검 및 지청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실시하다가

- 그 후 검찰에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업무도 담당하게 되자, 각 지검·지청의 법률구조 담당검사가 인권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87. 9. 1.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고 각 지검·지청에 지부를 설치하게 되자

- 자연스럽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인권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 각 지검·지청은 그와 별도로 민원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직원들을 배치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종래 인권상담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담당검사의 법률상담 실적은 그 통계를 민사·형사 등으로 분류하여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그 중에 인권문제상담 실적만을 따로 집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민원담당검사의 형사문제 법률상담 실적은 98년 89,013건, 99년 8월말 현재 56,670건으로서 그 중에 인권문제 상담실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별첨 「인권침해사건 통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권침해사건 통계보고서 3부(98년 종합분 및 99년 1/4분기분, 2/4분기분)

8. 98. 1.부터 현재까지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과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에 의한 활동현황 및 내역
- 인권옹호단체에 대한 감독현황
 - 각 지검 및 지청의 인권옹호과 및 인권상담소 월례 보고서 사본
 - 인권사건 중 특별사건에 대한 보고현황 및 처리현황

○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69. 7. 21. 법무부령 제135호)에 의하여 각 지검 및 지청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실시하다가

- 그 후 검찰에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업무도 담당하게 되자, 각 지검·지청의 법률구조 담당검사가 인권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87. 9. 1.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고 각 지검·지청에 지부를 설치하게 되자

인권침해사건 통계 보고서('98년 종합분)

구분	수리 (명)		계	처리		분 (명)					미				
	구 수	신 수		구속	불구속	구약식	무혐의	기별소유입예건	기내소사중중지	이송		기타	계		
														구공판	
														소	계
합	241	499	740	5	19	235	47	1	54	149	510	230			
경의 살한 관 리 침 해	154	372	526	5	7	176	27	1	39	121	376	150			
직권남용	26	169	195			67	4		21	72	164	31			
불법체포감금	25	61	86	3	1	31	12		14	5	66	20			
폭행기혹행위	103	139	242	2	6	75	11	1	4	44	143	99			
기타		3	3			3					3				
교의 도한 관 리 침 해	52	42	94			15	2		15	16	48	46			
소	49	27	76			9	2		9	16	36	40			
폭행기혹행위	3	15	18			6			6		12	6			
기타공무원에의한 침해	35	85	120		12	44	18			12	86	34			
합	114	408	522	110	20	89	31	48	32	82	426	96			
화대, 후사	39	91	130	29	5	15	12	10	2	22	104	26			
인신매매	52	177	229	48	4	47	6	27	25	23	180	49			
기타	23	140	163	33	11	27	13	11	5	37	142	249			
총	355	907	1,262	110	25	324	78	49	86	231	936	326			

- 자연스럽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인권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 각 지검·지청은 그와 별도로 민원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직원들을 배치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종래 인권상담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인권상담소의 운영에 따른 월례보고서는 작성한 바 없으며,

- 인권사건 중 특별사건에 대한 보고현황 및 처리현황은 별첨 「인권침해사건 통계보고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권침해사건 통계보고서 3부(98년 종합분 및 99년 1/4분기분, 2/4분기분)

인권침해사건 통계 보고서('99년 2/4분기)

구분	수리(명)	신수	계	처리			분			이송	기타	계	미계(명)		
				구공판		구약식	무혐의	기불소유입예건	기내소사중지					이송	기타
				구속	불구속										
공무원에 의한 침해	합계	111	197	308			6	74	13		74	12	179	129	
		소계	82	88	170				53	5	9	12	79	91	
	경의찰한리침해	죄권남용	53	22	75				18		1	8	27	48	
		불법체포·감금	10	14	24				11		5	1	17	7	
	교의도한리침해	폭행·기혹행위	19	52	71				24	5	3	3	35	36	
		기타													
	사인에 의한 침해	합계	24	17	41				10		8		18	23	
		소계	23	16	39				8		8		16	23	
	기타공무원에 의한 침해	합계	5	92	97			6	11	8	57		82	15	
		소계	52	107	159	11	7	2	46	8	7	9	113	46	
사인에 의한 침해	합계	1	33	34		6	1	9	3	5		34			
	소계	17	34	51	3	1		10	3	1	6	28	23		
총계	합계	163	304	467	11	7	8	120	21	7	83	35	292	175	
	미계														

구분	수	신수	계	처리			분			이송	기타	계	미계(명)		
				구공판		구약식	무혐의	기불소유입예건	기내소사중지					이송	기타
				구속	불구속										
공무원에 의한 침해	합계	50	180	230			1	78	13		13	13	111		
		소계	36	145	181				71	6	1	9	99	82	
	경의찰한리침해	죄권남용	8	66	74				15			1	1	53	
		불법체포·감금	3	19	22				6	6		3	2	10	
	교의도한리침해	폭행·기혹행위	25	56	81				48			3	3	19	
		기타		4	4				2		2		4	-	
	사인에 의한 침해	합계	8	22	30				3		3		6	24	
		소계	5	21	26				3		3		3	23	
	기타공무원에 의한 침해	합계	3	1	4				3			1	1	1	
		소계	6	13	19			1	4	7	1	1	14	5	
사인에 의한 침해	합계	35	108	143	20	8		13	8	4	14	20	52		
	소계	3	18	21	7			6	4	4	4	23	17		
총계	합계	12	28	40	3	1		6	4	5	4	23	17		
	미계	20	62	82	10	7	7	1		2	10	11	48	34	
총계	합계	85	288	373	20	8	8	91	21	10	27	25	210	163	
	미계														

인권침해사건 통계 보고서(99. 1/4분기)